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78
----------	-------

발의연월일 : 2025. 9. 23.

발 의 자 : 이재강 · 윤종오 · 임미애
김준형 · 정혜경 · 한정애
최민희 · 이광희 · 김우영
이해민 · 박홍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는 공중위생 및 소비자 보호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에는 특정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들이 구토, 고열, 거동불편 등 증상을 보이다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 중 500여 마리가 유사 증상을 나타냈고, 200마리 이상이 폐사함. 정부는 해당 사료와 폐사한 고양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반려동물 집단폐사 사고는 국내외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료 이외에 생활조건은 서로 상이한 반려동물이 같은 시기 같은 증상으로 집단 폐사하는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과 관리체계, 대동물과 차별되는 영양학적 기준 마련이 미흡함이 드

러났음.

반려동물사료를 규율하는 현행법으로는 「사료관리법」이 있으나 「사료관리법」은 축산업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대동물 가축용 사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려동물사료의 전문적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예를 들어, 반려동물에 집단적 위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대응 근거와 생산·판매 이력 추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평상시에도 영양학적 기준과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 가족의 정보 접근권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반려문화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기존 「사료관리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을 책무로 하며, 사업자는 안전한 사료 생산·판매와 국가·지자체 시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권장
규격 설정·위해성평가·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반려동물사료의 권장규격과 안전기준을 연구·제도화하고, 표시기
준 및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마. 위해 우려가 있는 사료의 유통을 즉시 차단하기 위한 긴급대응 권
한과 원인 규명을 위한 회수·검사명령, 추적조사, 역학조사, 검안
·해부 명령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불응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안 제9조~제15조, 제21조, 제22조).

바. 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생산·유통 정보 뿐
아니라 피해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와 연
계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8조).

사. 권한·업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0
조)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대우하는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며, 기존 「사료관리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집단적 위해 및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사료”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중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에게 급여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반려동물사료의 생산·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양질의 안전한 반려동물사료를 생산·판매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사료 안전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반려동물사료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반려동물사료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료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5조(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①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반려동물사료의 권장규격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반려동물사료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응과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반려동물사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의사로서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사료의 안전 및 영양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반려동물사료 관련 사업자, 일반 소비자단체 또는 반려동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동물보호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 중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권장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하여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 외에 반려동물의 급식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영양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권장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공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정된 사료공정이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료공정이 설정되거나 변경되기 전까지 임시의 권장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③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위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 현행 사료공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성분·물질이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료공정의 개정 또는 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권장규격의 범위 및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영양기준 연구 및 위해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인자에 관한 연구 및 시험·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시험·분석은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사료관리법」 등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대학, 수의학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기준, 권장규격 및 표시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험·분석·연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시기준 및 금지행위) ① 반려동물사료의 표시기준에 관하여는 「사료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건강 상태, 영양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표시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사항에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해당 사항의 과학적 타당성과 소비자 오인 방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객관적 근거나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2.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3.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객관적 자료 없이 우수성을 강조하는 행위
4. 그 밖에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허위·과장된 표시를 하는 행위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표시의 정정·삭제 또는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표시기준의 세부사항, 기능성 표시의 허용 기준 및 절차, 점검 및 행정조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긴급대응)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긴급대응의 시행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

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조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판매 등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사료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 우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반려동물사료의 종류의 공표
2. 해당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위해의 종류 및 정도의 공표
3.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 대처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생산·판매 등의 금지 또는 회수명령
5.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명령, 추적조사, 역학조사, 검안·해부 명령
6. 그 밖에 위해방지 및 확산 차단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한 경우, 그 위반 사실과 관련 사업자의 명칭, 위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유관단체 및 일반 국민에게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사업자 및 소비자는 긴급대응방안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생산·판매 등의 금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반려동물사료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생산·판매 등이 금지된 반려동물사료의 생산·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를 거칠 경우 위해 확산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지조치의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해성 평가, 역학조사 결과,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결과와 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반려동물사료를 생산·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반려동물사료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견과 위해성 평가 및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사료를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반려동물사료를 생산·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위해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기관·검사방법 및 검사인을 별도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자는 그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시 위해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회수, 생산·판매금지, 표시기준 설정 등 안전조치의 판단 근거로 활용한다.

⑤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은 제16조에 따른 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급식 후 이상 증상이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하여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추적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반려동물사료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 있는 때에는 합동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함께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반려동물사료의 생산·판매 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기록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의 생산·판매 등의 과정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는 반려동물의 섭취 이력, 건강 상태, 증상, 진료기록, 사료성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포함하고, 그 결과는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수의사, 관련 전문가, 동물병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역학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종합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 관계 기관 및 유관 단체에 공개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역학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검안·해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반려동물 사체의 검안 또는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안을 우선 실시하되, 검안만으로는 원인 규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부를 명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급식 후 이상 증상으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체의 검안 또는 해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안 또는 해부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안 또는 해부를 하려면 미리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이나 긴급한 사정 등으로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위생시험소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안 또는 해부 이후 사체의 처리는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방안을 설명하고 소유자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안·해부와 이에 수반되는 사체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검안·해부 절차, 사체의 처리, 비용 지원 범위와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안전정보, 피해사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집행 및 긴급대응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공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사료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제보 중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사료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정보와 제18조에 따른 피해사례 및 피해구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사료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사료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비자 및 사업자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반려동물사료의 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교육, 위해정

보 신고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검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반려동물사료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반려동물사료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소비자 피해 보호 및 구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 우려가 있는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안전정보망을 활용한 피해사례의 수집, 관련 정보 제공, 소비자 보호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위해사료 섭취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피해구제 절차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려동물사료의 제조·수입·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위해사료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협조하고,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고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피해구제 절차 운영 및 연계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분쟁조정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연계 절차, 소비자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재산적 손해에 그치지 아니하고 애착 대상의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 및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반려동물사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벌칙) 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판매 금지된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검사명령·추적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6조에 따른 안전정보망 신고·제보와 관련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